법원공보

2024. 11. 01 제 1699호 14 법원행정처

contents

<u>내규</u>	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	1723
<u>예규</u>	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————	1727
신법령 목록		1735

내규

◉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(법원행정처내규 제132호 2024. 10. 23. 결재)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 제목 "(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)"를 "(직무방해 민원인 등에 대한 조치)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"를 "행위를 하는 자(이하 "직무방해 민원인 등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심리민원인"을 "직무방해 민원인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특이심리민원인을" 각 "직무방해 민원인 등"으로 한다.

제56조제2항제3호 중 "특이심리민원인"을 "직무방해 민원인 등"으로 한다. 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]

일과시간 외 인원·차량 출입일지

결	당직근무반장	보안관리팀장	청보안담당관	사무관	대 징	-
재						

월 일(년 용무 연번 성 명 입시 비고 차량번호 출시 기타 당직접수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

- 제54조(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) ①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, 시위과정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란행위, 법관에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, 전화폭력 등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경찰에 신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청사보안담당관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심리민원인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관리대원에게 전파하며, 필요에 따라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.
 - ③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은 종합민원 실에 민원업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밖의 청사 출입은 제한한다.
 - ④ <u>특이심리민원인</u>을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<u>특이심리민원인</u>의 청사 출입을 저지하고 상 황을 보고한다.
 - ⑤ (생략)

제56조(보고책임) ① (생략)

- ② 1. ~ 2. (생략)
- 3. 특이심리민원인 발견, 발생 및 조치
- 4. ~ 15. (생략)

	개 정 안
저	54조(<u>직무방해 민원인 등에 대한 조치</u>) ①
	항위를 하는 자(이하 "직무방
	<u>해 민원인 등"이라 한다</u>)
	②직무방해 민원인 등의
	③ <u>직무방해 민원인 등</u>
	④ <u>직무방해 민원인 등</u>
	직무방해 민원인 등
	⑤ (현행과 같음)
ス]56조(보고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	② 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직무방해 민원인 등 --, ------

4. ~ 15. (현행과 같음)

예규

●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406호 2024, 10, 23, 결재)

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, 제6조 및 제21조제3항 중 "보안경비직공무원"을 각각 "보안직 공무원"으로, "보안직공무원"을 각각 "보안관리직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2호,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"경비봉"을 각각 "삼단봉"으로, 제22조제1항 중 "경적"을 "호각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 방청석 앞쪽에 위치하여 근무한다. 다만 필요 시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중 "주기적으로"를 "매 분기 1회 이상"으로 한다.

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,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5조(보안검색장비)

- ①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-ray 소형화물투시기, 문형금속탐지기(검색대),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.
- ② 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X-ray 소형화물투시기 일일점검표

■ 점검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점 검 결 과
본 체	장비의 파손 부위는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본체 덮개는 마모된 부위 없이 덮여있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본체 납커텐은 달려있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/ / 기 시 티	시스템 환풍구는 열려있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시스템	시스템 주변에 액체류가 흐른 자국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컨베이어 벨트는 찢어진 곳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소형화물투시기 Key 스위치를 돌렸을 때 ON표시에 점등이 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키보드	키보드 케이스는 파손된 부위는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입력 단자를 눌렀을 때 잘 입력이 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모니터	모니터는 파손된 부위는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<u> </u> 포덕덕	장비를 켰을 때 모니터의 화면은 잘 나오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カルロ	시스템에 물체를 넣었을 때 유형에 따라 색깔별로 영상에 나 타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작동 제어	컨베이어 벨트가 이상없이 작동되며 전진과 후진이 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장비 작동간 소리는 안정적인가?	□ 양호 □ 미흡
■ 圣ズ	사항	

문형금속탐지기(검색대) 일일점검표

■ 점검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점 검 결 과
시스템	장비의 파손 부위는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탐지기 주변에 액체류가 흐른 자국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탐지기 주변에 이물질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전원을 켰을 때 램프는 정상적으로 켜지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금속물체 통과시 소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작동 제어	금속물체 통과시 적색 램프가 켜지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탐지 위치별로 정상적으로 탐지는 되는가? * 머리, 어깨, 허리, 허벅지, 발목 부위	□ 양호 □ 미흡
	장비 작동간 이상 소음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
■ 조치사항

휴대용 금속탐지기 일일점검표

■ 점검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점 검 결 과
시스템	장비의 파손 부위는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시스템	탐지기 주변에 이물질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전원을 켰을 때 장비는 정상 작동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작동 제어	금속물체 탐지시 소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	장비 작동간 이상 소음은 없는가?	□ 양호 □ 미흡
■ 圣치	사항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항

제4조(조직) ① 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(조)로 한다.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 복무요원은 법원경위, 별정직 법원보안관리 대원, 청원경찰, 보안경비직공무원, 보안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

제6조(인사)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위, 보안경비직공무원, 보안 직공무원, 그 밖에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직원,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, 청원경찰, 그 복무분야가'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보조'인 사회복무요원(이하 "법원직원 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근무수칙)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 이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법원경위 또는 선임대원은 법정 안에서 이동하며 근무하고, 그 나머지 대원은 재판장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근무한다.

2. ~ 8. (생략)

	개	정	안
제4조(조직) ①			
		보안직	공무원, 보안관
<u>리직 공무원</u>			
② ~ ④ (현행	과 깉	음)	
제6조(인사)			
		보안직	공무원, 보안관리
<u>직 공무원</u> ,			
제14조(근무수칙)		
<u>1. 법정 안에서</u>	근무	하는	<u>법원보안관리대원은</u>
법정 방청석 9	암쪽o	ll 위치]하여 근무한다. 다
만 필요시 위치	시를 '	달리 전	정할 수 있다.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현 행

- 제19조(자체교육)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교육을 <u>주기</u>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경비봉</u>, 가스분사기 등 각종 보안장비의 사용 요령
 - 3. · 4. (생략)
 - ② (생략)

제21조(제복의 착용) ①·② (생 략)

- ③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법원경위,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, 보안경비직공무원, 보안 직공무원,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1 항에 규정된 제복 이외의 사복 또는 기타 특수한 복제를 착용하거나 제식을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 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.
- 제22조(보안장비)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 장비로 <u>경비봉</u>, 가스분사기·무전기·<u>경적</u>을 휴대할 수 있다.
 - ② <u>경비봉</u>과 가스분사기는 신체적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는 장비사용일지에 그 사용상황과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자체교육) ①
<u>매 분기</u>
<u>1회 이상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삼단봉,
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제복의 착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보안직 공무원, 보안</u>
<u>관리직 공무원</u> ,

제22조(보안장비) ① -----

-----.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개 정 안 제25조(보안검색장비) ① 청사 및 법정 보안 검색을 위해 X-ray 소형화물투시기, 문형금속탐지기(검색대),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. ② 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. 제26조 (현행 제25조와 같음) 제27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

신법령 목록

(2024. 10. 1.~2024. 10. 15.)

조약

조약제2584호

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20844 2024. 10. 02

3

대통령령

대통령령제34925호	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	20844	2024. 10. 02	18
대통령령제34926호	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9
대통령령제34927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(별권) 2
대통령령제34928호	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″ 3
대통령령제34929호	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847	2024. 10. 08	4
대통령령제34930호	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	"	"	6
대통령령제34931호	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7
대통령령제34932호	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
대통령령제34933호	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9
대통령령제34934호	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	"	"	12
대통령령제34935호	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3
대통령령제34936호	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4
대통령령제34937호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	"	"	21
대통령령제34938호	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n	22
대통령령제34939호	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23

대통령령제34940호	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	"	"	25
대통령령제34941호	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	20851	2024. 10. 15	4

총리령

총리령제1985호	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일부 개정령	20845	2024. 10. 04	3
총리령제1987호	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(별권) 2
총리령제1986호	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846	2024. 10. 07	4
총리령제1989호	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	20851	2024. 10. 15	(별권) 2

부령

보건복지부령제1060호	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845	2024. 10. 04	16
보건복지부령제1061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7
행정안전부령제520호	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8
보건복지부령제1062호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	"	"	(별권) 5
국토교통부령제1391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	20847	2024. 10. 08	26
국토교통부령제1394호	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	20848	2024. 10. 10	3
환경부령제1121호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4
보건복지부령제1063호	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850	2024. 10. 14	4

보건복지부령제1064호	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	"	"	5
중소벤처기업부령제93호	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	"	"	6



법원행정처

SUPREME COURT OF KOREA 2024. 11. 01. **VOL. 1699**



ISSN 2951-2255